

상벌위원회 규정



대한장애인역도연맹

상벌위원회 규정

제 정 2012. 3. 8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규정은 대한장애인역도연맹 정관 제6장 제36조 1항 4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본회의 각종 규정을 총괄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체육계의 단체와 개인의 공적에 대한 표창과 비위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적정·공평성을 확보하고 이사회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연맹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연맹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표창에 관한 사항
4. 징계에 관한 사항
5.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6.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위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역도분야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한장애인역도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제8조(회의소집)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①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원회 위원의 3분의 2이상 이 요구하였을 때

제9조(의결정족수) ①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 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②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①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회장의 동의하에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제적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2012. 03. 08)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